##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74 발의연월일: 2020. 11. 6.

발 의 자:김기현·양금희·추경호

권명호 · 정희용 · 김정재

유창현 · 김영식 · 배준영

홍준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고위험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일반적인 산모와 출생아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의료비에도 특별세액공제규정을 두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5.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	
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의 100분의 15( <u>제3호의 경우에</u>	<u>제</u> 3호의 경우에는 <u>100</u>
<u>는 100분의 20</u> )에 해당하는 금	분의 30, 제4호 및 제5호의 경
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	<u> 우에는 100분의 20</u>
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	1
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	<u>제2호부터 제5</u>
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u>호까지</u>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신 설>

③ ~ ⑪ (생 략)

임산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5.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의료비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 ① (현행과 같음)